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절도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3. 2004노3761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 박봉희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재호

【원심판결】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0. 22. 선고 2003고단9199 판결

【주문】

1

원심판결을 파기한다.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압수된 영업관련파일철(증제4호) 중 '매출단가 품의서' 1부, 'LED 조립 CAPA 현황' 1부, '2002년도 삼성전기향 CHIP LED 사업계획서' 1부, 'SMD CHIP LED(STANDARD PART LIST)' 1부, '2002년 영업추진계획' 1부(증제5호), ' 공소외 1 주식회사 중장기 사업계획서' 1부(증제6호), 'LDM REFLECTOR 설계도면' 1장(증제7호), 'BLUE SMD LED 조립공정 문제점 및 개선대책' 1부(증제10호)를 각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환부한다.

[이유]

】1.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어떤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직원 개인이 소지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그 자료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나, 그렇지 아니한 자료는 직원들의 처분에 맡겨진 직원들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,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(이하 '피해 회사'라 한다)를 퇴사하면서 원심 판시 제 1항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, 위 자료들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절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.

둘째,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한 바 없고,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영업비밀 누설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.

셋째, 원심판결의 형량(징역 6월)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판단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,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성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들로서 피해 회사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게 그 소지 및 사용을 허락하였을뿐이고,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까지 이전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로 의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,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,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다.

그러므로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,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【이유】

- 11.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.
- 첫째, 어떤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직원 개인이 소지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그 자료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나, 그렇지 아니한 자료는 직원들의 처분에 맡겨진 직원들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,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(이하 '피해 회사'라 한다)를 퇴사하면서 원심 판시 제 1항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, 위 자료들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절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.
- 둘째,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한 바 없고,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영업비밀 누설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.

셋째, 원심판결의 형량(징역 6월)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판단

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,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성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들로서 피해 회사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게 그 소지 및 사용을 허락하였을뿐이고,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까지 이전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로 의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,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,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다.

그러므로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,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【이유】

- 11.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.
- 첫째, 어떤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직원 개인이 소지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그 자료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나, 그렇지 아니한 자료는 직원들의 처분에 맡겨진 직원들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,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(이하 '피해 회사'라 한다)를 퇴사하면서 원심 판시 제 1항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, 위 자료들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절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.
- 둘째,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한 바 없고,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영업비밀 누설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.

셋째, 원심판결의 형량(징역 6월)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판단

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,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성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들로서 피해 회사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게 그 소지 및 사용을 허락하였을뿐이고,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까지 이전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로 의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,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,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다.

그러므로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,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【이유】

- 11.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.
- 첫째, 어떤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직원 개인이 소지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그 자료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나, 그렇지 아니한 자료는 직원들의 처분에 맡겨진 직원들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,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(이하 '피해 회사'라 한다)를 퇴사하면서 원심 판시 제 1항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, 위 자료들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절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.
- 둘째,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한 바 없고,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영업비밀 누설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.

셋째, 원심판결의 형량(징역 6월)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판단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,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성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들로서 피해 회사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게 그 소지 및 사용을 허락하였을뿐이고,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까지 이전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로 의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,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,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다.

그러므로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,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【이유】

- 11.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.
- 첫째, 어떤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직원 개인이 소지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그 자료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나, 그렇지 아니한 자료는 직원들의 처분에 맡겨진 직원들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,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(이하 '피해 회사'라 한다)를 퇴사하면서 원심 판시 제 1항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, 위 자료들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절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.
- 둘째,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한 바 없고,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영업비밀 누설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.

셋째, 원심판결의 형량(징역 6월)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판단

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,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성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들로서 피해 회사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게 그 소지 및 사용을 허락하였을뿐이고,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까지 이전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로 의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,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,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,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

다.

그러므로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,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